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시대 최고의 백과사전

1908년(순종 2) ~ 미상



1 개요

『증보문헌비고』는 1770년(영조 46) 영조의 명으로 편찬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증수, 보완한 것이다. 고종황제의 명으로 1903년(광무7) 홍문관에 문헌비고찬집소를 설치한 이후 5년 만인 1908년 간행되었다. 『증보문헌비고』는 25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변화된 조선의 문물제도가 반영되었다.

2 고종, 『문헌비고』의 증수를 명하다

『증보문헌비고』는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문헌비고』를 증수,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헌비고』는 1770년 영조의 명으로 편찬된 『동국문헌비고』를 말한다. 이 책은 100권 40책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조의 어제(御製) 서문이 붙일 정도로 국가적 관심이 컸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만든 것이라 내용이 소략하고 오류도 많아 1790년(정조 14) 이를 개찬하여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하였다. 물이(物異), 궁실, 왕계(王系), 예문(藝文), 씨족, 시호(諡號), 조빙(朝聘)과 관련된 항목이 추가, 보완되었다.

이후 정조는 『일성록』에 기록된 것을 보충하도록 다시 지시하여 『동국문헌비고』의 수찬이 세 번째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809년(순조 9) 235권 102책으로 완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1770년(영조 46) 이전의 자료는 보(補)로, 그 이후의 보완된 기록은 속(續)을 붙여 표시하였다.

『동국문헌비고』의 네 번째 편찬은 1903년 2월 법무국장이던 김석규(金錫奎)가 전례와 사적에 관한 문헌의 보충과 수정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진행되었다. 관련사료 고종은 『동국문헌비고』가 영조대 이후 보완되지 못하여 그 이후의 실상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홍문관(弘文館)이 주도하여 편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홍문관에서는 문헌비고찬집소를 설치하고, 편찬위원을 임명하였다. 당상관으로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남정철(南廷哲), 회계원 경(會計院卿) 이재곤(李載崑), 외부 협판(外部協辦) 이중하(李重夏), 법부 법무국장(法部法務局長) 김석규를 선정해 합의 하에 편찬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수하는 문헌비고의 초안을 작성할 기초 위원(起草委員) 8인을 궁내부(宮內府)에서 선발하고 경비도 마련해 주도록 지시하였다. 관련사료 같은 해 8월에는 특진관 박용대(外容大)를 문헌비고속편(文獻備考續編)인 『증보문헌비고』의 편찬 당상에 임명하였다.

1903년 증수를 결정한 문헌비고속편의 자료 수집을 위해 공사(公私)의 서류와 각 관사의 담당 사무를 뽑아 모으는 데에만 3년이 걸렸다. 그리하여 1906년(광무 10) 3월 5일 증수할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어 찬집(纂輯)에 들어 갔으며, 관련사료 12월에 초고가 완성되어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종 완성은 1907년 2월 11일이다. 교정 총 재(校正總裁) 박제순(朴齊純)은 홍문관에 모여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오자가 없도록 대조, 교정한 다음 완성본 250권 95책을 고종에게 올렸다. 관련사료

이후 고종은 『증보문헌비고』의 간행을 위해 의정부 참찬 한창수(韓昌洙)를 감인 위원장(監印委員長)에 임명하였으며, 탁지부 인쇄국에서 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탁지부에서는 감인비용으로 720환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관련사료

3 관찬 백과사전, 『증보문헌비고』의 체제

『증보문헌비고』는 250권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상위고(象緯考), 여지고(輿地考), 제계고(帝系考), 예고(禮考), 악고(樂考), 병고(兵考), 형고(刑考), 전부고(田賦考), 재용고(財用考), 호구고(戶口考), 시적고(市糴考), 교빙고(交聘考), 선거고(選擧考), 학교고(學校考), 직관고(職官考), 예문고(藝文考) 등 16고로 이루어졌다.

『증보문헌비고』는 앞서 편찬된 『증정동국문헌비고』가 20고였던 것을 불필요한 기사를 생략하여 16고로 정리하였다. 글의 순서와 항목명도 수정되었다. 기존 문헌비고에서는 임금의 명령에 상위고, 여지고, 예고의 순으로 차례를 정하였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이러한 순서와 달리 예고 앞에 제계고를 넣었다. 또한 기존 문헌비고에서 '왕계고(王系考)'라 하였던 것을 고종이 황제를 칭하였기 때문에 '제계고'로 개칭하고 '씨족고'를 합쳐 실었다. '조빙고(朝聘考)'도 조공을 바치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므로 '교빙고'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물이고(物異考)는 상위고에 넣었으며, 궁실고(宮室考)는 여지고에 넣었다. 시호고(諡號考)는 직관고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맨 뒤에 예문고를 실었다.

4 『증보문헌비고』의 내용(1)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고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었다. 천체의 운행과 역법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과 표가 첨부되었다. 신라, 고려, 조선의 역상연혁(曆象沿革)을 비롯하여 천지(天地), 칠정(七政), 경도와 위도, 적도, 북극고도, 일식과 월식, 해시계의 구조, 혜성, 천재지변, 화재 등이 서술되었다.

여지고는 총 27권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단군 조선, 기자 조선, 위만 조선, 한사군, 마한, 진한, 변한을 비롯하여 고려, 조선까지 국호와 도읍 제정, 국가의 강역이 역대 국계(曆代國界) 항목으로 서술되었다. 또한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시대 군현의 연혁, 산천, 도리(道理)가 도별로 서술되었으며, 역대 성곽(城郭), 도성(都城), 판축(版築), 해방(海防), 해로(海路)가 관방(關防)의 항목으로 서술되었다. 마지막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 마한, 읍루, 가락국, 태봉, 고려, 조선의 역대 궁실이 서술되었고, 각 도에 있는 외방 궁실(外方宮室)이 군현별로 서술되었다.

제계고는 총 14권으로 이루어졌다. 제계고(帝系考)를 기재하는 체제(體制)는 다른 편의 구성과 조금 다르다. 다른 편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의 순으로 실었는데, 이 편에서는 조선조를 먼서 서술하였다. 이유는 삼국이나 고려의 경우 제호(帝號)가 없었고 조선의 경우 고종대 황제로 칭하고 건국시조인 태조와 그의 사조(四祖)를 추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선보기년(璿譜紀年)'이라 하여 조선의 세계(世系)를 먼저 기록하고 단군(檀君)·기자(箕子) 이후로 고려조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차례대로 붙여 써서 '역대기년(歷代紀年)' 이라하였다. 또한 태상왕, 태후, 후비, 저사(儲嗣), 세자빈, 왕자, 왕녀, 종실, 국호, 위호(位號), 연호를 역대별로 서술하였다. 아울러 기존 "문헌비고』 예고(禮考)의 잡편(雜編)에 있던 씨족(氏族)의 항목을 제계고에 부기(附記)하였다. 씨족의 항목에서는 단군(檀君) 때에 예국(濊國)의 군장(君長) 여수기(余守己)에게 서씨(徐氏) 성을 내려준 것을 비롯하여 마한,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의 각 성씨와 성(姓)의 유래에 대해 총 8권에 걸쳐 서술하였다.

예고는 총 36권으로 구성되었다. 환구, 사직, 종묘, 제향, 묘호, 공신배향, 혼전(魂殿), 궁묘, 제단, 국휼(國恤), 산 릉, 관례(冠禮), 혼례, 책례, 하례, 조의(朝儀), 새인(璽印), 입후(立後)등이 서술되었다. 악고는 총 19권으로, 도량 형, 역대 악제(歷代樂制), 악기, 악가(樂歌), 악무(樂武) 등이 서술되었으며, 병고는 총 18권으로, 제치(制置), 숙위, 법령, 교열(敎閱), 병서, 위병(衛兵), 군문, 군액, 기보병(畿輔兵), 주군병(州郡兵), 봉수 등이 역대별로 서술되었다. 그 가운데 군액은 갑오개혁 이후로 대호(隊號)의 변혁과 군액(軍額)의 증감(增減)이 많아 1904년의 편제만을 기록하였다.

5 『증보문헌비고』의 내용(2)

형고는 총 14권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역대 형제(刑制)를 비롯해 장률(贓律), 치도(治盜), 사치 금지, 금주, 금우(禁牛) 등의 금제(禁制), 상언, 휼형 등이 서술되었다. 또한 『대명률』, 『경제육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의 법전류를 포함하여 『무원록(無寃錄)』, 『사송유취(詞訟類聚)』, 『청송지남(聽訟指南)』, 『흠휼전칙(欽恤典則)』, 『추관지(秋官志)』 등의 형서(刑書)도 수록되었다. 아울러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에 해당되는 각종 죄목을 열거한 제율 유기(諸律類記)를 수록하였다.

한편, 『증보문헌비고』에는 1900년(광무 4) 만들어진 육군 법률(陸軍法律)이 첨부되었다. 군인이 난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인명, 재산을 해치는 자에 대한 처단인 결당작란율(結黨作亂律)이 수록되었다. 또한 군무상의 명령을 어긴 명령위항률(命令違抗律),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이 없는데 외국의 지계(地界)를 범하여 넘어간 권외천행률(權外擅行律), 군인으로서 힘껏 싸우지 않고 달아나거나 후퇴하거나 적에게 투항하거나 성채(城寨)를 버린 자 등에 대한 처단인 욕직률(辱職律),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간을 어길 때 처벌하는 위기율(違期律)등이 보완되었다. 이밖에 폭행률(暴行律), 살상률(殺傷律), 규피율(規避律), 도망률(逃亡律), 사위율(訴僞律)이 수록되었다.

전부고는 총 13권으로 구성되었다. 경계(經界)조를 비롯하여 권농하는 뜻에서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토지인 적전 (籍田), 관직자에게 지급한 직전(職田), 지방 관청의 경비 조달이나 소속 관원에게 지급된 늠전(廩田), 둔전 등을 비롯한 제언, 조세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다. 재용고는 총 7권으로 구성되었다. 국용을 제일 먼저 기술하였으며, 조운(漕運)·어염(魚鹽), 전화(錢貨)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호구고는 총 2권으로 역대 호구와 호패, 노비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시적고는 총 8권으로 시전을 비롯하여 중강 개시, 북관 개시, 왜관 개시, 부록 한일세칙, 부록 각국 세칙, 부록 한오 세칙(韓奧稅則), 부록 해관 장정(海關章程), 창고, 진휼 등이 수록되었다.

교빙고는 총 13권으로 이루어졌다. 역대조빙(歷代朝聘)을 비롯하여 조선과 중국, 일본, 기타 각국과의 교빙에 대해 서술했으며, 이와 관련한 한청통상조약, 한미조약, 각국조약동이합편(各國條約同異合編), 각 조약부속통상장정 등이 실려 있다. 선거고는 18권으로 과거제, 전주(銓注), 증직, 천용(薦用) 등이 서술되었다. 학교고는 12권으로 태학을 비롯하여 문묘, 행학(幸學), 흥학, 학관, 학령, 사학(四學), 향학, 서원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직관고는 총 28권으로 구성되었다. 관제를 비롯하여 여러 관사들의 연혁이 실려 있다. 제일 먼저 종친부가 서술 되었으며, 다음으로 상부(相府), 제부(諸府), 6조, 사헌부와 사간원인 대성(臺省), 관각(館閣), 관상감, 군자감, 제용감, 선공감, 광흥창, 전옥서 등의 제사(諸司), 무직(武職), 내시, 권설직, 잡직, 이서, 외관(外官) 등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아울러 갑오개혁 이후 변화된 관제가 첨부되었다. 갑오개혁으로 호조와 형조가 탁지부(度支部)와 사법부(司法部)로, 이조가 내부(內部)로 변하고 학교 행정은 학부(學部)에서 관할하고, 나라의 의식은 예원(禮院)에서 관할하였다. 즉 갑오개혁 이후 예전 관제의 명칭을 그대로 따랐지만 직사가 다른 경우도 있고, 칭호가 바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관고에서는 새로 '갑오경장의 관제'라는 편목을 만들었다. 예문고는 9권으로 구성되었다. 역대 서적으로 비롯하여 저술, 사기(史記), 어제(御製), 문집 등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었다.

6 『증보문헌비고』의 의의

『증보문헌비고』는 고종대 국가가 주도하여 편찬한 백과사전식의 서적이다. 영조대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이후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 『증보문헌비고』까지 이르렀다. 『증보문헌비고』에서는 개화기 이후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보충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동국문헌비고』와 달리 개항조약문, 서기연호 사용, 전보, 전화, 철도, 8도에서 13도로의 개혁, 각종 신식학교의 소개, 육군법률의 소개, 신군제의 수록, 군악대, 관리의 봉급표, 중앙은행 조례 등 근대의 기록이 나타났다. 즉 『증보문헌비고』는 갑오개혁 이후의 자료들을 보완하여 한국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류한 책이다. 이는 편찬 당시까지의 자료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당대사를 정리했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이처

럼 『증보문헌비고』는 한국학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조선을 알고자 한 일본인들이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 자료로 활용하였다.